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27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3.

발 의 자 : 최수진 · 김예지 · 성일종
구자근 · 서지영 · 김은혜
김민전 · 박충권 · 김미애
신성범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(이하 “시설물”이라 함)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면서, 부설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

대통령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판매시설,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화물의 하역에 필요한 공간 등을 고려한 주차시설 및 주차구획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.

그런데 판매시설,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출입로의 폭과 높이가 충분하지 않아 화물자동차가 부설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거나 화물자동차가 주차하여 화물의 하역이 가능한 충분한 공간이 부설주차장에 마

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인근 도로에 화물자동차가 불법 주정차하여 화물을 하역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판매시설,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).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「건축법」에 따른 판매시설,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이 확보되도록 정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부설주차장의 설치·지정)</p> <p>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후단 신설></p> <p>④ ~ ⑰ (생 략)</p>	<p>제19조(부설주차장의 설치·지정)</p> <p>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. <u>이 경우 「건축법」에 따른 판매시설,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이 확보되도록 정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~ ⑰ (현행과 같음)</p>